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소청 신설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 정비〉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65호)

2026. 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천준호 · 전은수 · 박균택 · 김한규 · 김 윤 · 문금주 ·
임미애 · 한병도 · 이주희 · 김성희 · 장종태 · 박상혁 ·
이정현 · 전용기 · 박정현 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6. 9. 9.

3. 회 부 일 : 2026. 9. 10.

※ 의안번호 : 2126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 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u>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장</u> 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 ----- <u>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장</u>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일반적인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일반사법경찰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됨.¹⁾

현행법 제17조는 대통령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부여하고, 경호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업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한편, 2026. 3. 24. 제정된 「공소청법」이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종전의 검찰청을 대신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공소청법」 부칙은 종전 검찰청의 소관 사무 중 공소청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기관·공무원도 새로운 조직 체계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경호처장의 제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지명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명권자의 명칭을 새로운 조직체계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보여짐.⁴⁾

문 의 처

02)6788-5016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예정) 부칙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한다.

제8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검찰청의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제21191호)」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